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조금에서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3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조금에서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안 제27조의3 신설)	2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관리 교육 실시 (안 제27조의4 신설)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5.

다.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조금에서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지출한 감사인 선임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동일 회계연도 중에 총액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감사인¹⁾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이는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도입되었는데, 보조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보조사업자등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한 감사인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되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고 있어 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감사인 선임 비용 지원 여부에 대해 보조금 규모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각 보조사업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별 특수성·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을 승인³⁾하는 것이 효율적·합리적이며, 재정력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보조’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회계감사 비용의 지원 여부를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개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회계감사 비용 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3) 농식품·문체·해수부는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25% 지원중

[다른 법령에서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

법률명	조문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4)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⁵⁾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 ①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회계감사와 관련한 경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5) 공익법인등(마목 제외)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보조사업자들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함)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들은 자체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들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포함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간의 자율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을 우선으로 하되 동 사업자의 주요 업무·재정 상황·자체수입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회계감사 관련 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인 선임 비용 중 일부를 동 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들의 특수성·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보조사업자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에 대한 변동 없이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실질적인 보조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7조의3(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감사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문의처

02)6788-5152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관리 교육 실시 (안 제2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회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

현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의 중복수급·부정수급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 활용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여야 함.⁶⁾

이를 위하여 현재 보조금종합포털(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중앙관서·지자체 공무원·공공·민간)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업무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실습교육, 인터넷강의 등 e나라도움 전반의 교육을 제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공하고 있음.

[e나라도움 교육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교육 과정]

대상	과정명	주요내용
보조사업자	신청·교부과정	사용자등록 및 사업유형별 업무흐름의 이해(사업신청, 등록, 교부신청)
	집행과정	전사(세금)계산서 및 보조금전용카드 등록, 집행정보 등록 및 집행요청
	정산과정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등록, 상시점검 및 정산관리, 정보공시 등의 업무
	집행·정산과정(응용)	집행등록·취소, 상시점검·정산관리, 반납관리·정보공시 사례 실습
	계약·중요재산과정	계약 개요 흐름(계약 요청 및 체결), 선금지급, 계약 검사, 대금 지급 처리
	정산·이월과정	상시점검 및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등록, 정산관리 및 이월신청 등의 업무
	비예치집행과정	업무대행자, 비예치형 사업에 대한 업무 흐름 및 보조금전용카드, 집행정보 등록 관리
	비예치정산과정	업무대행자, 비예치형 사업에 대한 정산 업무 흐름 및 상시점검 정산보고서, 반납 관리
상위 보조사업자	공모·교부과정	공모등록 및 자격검증,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관리, 기타 사업별 관리
	정산과정	정산개요 및 업무 흐름(상시점검), 반납 절차 및 부정수급, 정보공시
	부정수급관리	부정수급 관리개념 및 법령, 단계별 검증 관리 안내 및 부정수급 사례
지자체 공무원	공모·교부과정	공모등록 및 자격검증,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관리, 기타 사업별 관리
	정산과정	정산개요 및 업무흐름(상시점검), 반납 절차 및 부정수급, 정보공시
	정산·이월과정	부정수급 관리개념 및 법령, 단계별 검증 관리 안내 및 부정수급 사례
중앙관서 공무원	공모·교부과정	보조사업담당자 관리, 내역사업 등록 및 보조사업 관리, 교부 및 중요재산 관리
	정산·부정수급과정	상시점검 및 이월점검, 정산관리 및 반납, 수납, 정보공시 및 부정수급 관리
	수행배제과정	수행배제 법령, 부정수급업무 및 보조사업자 업무 시스템 활용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등의 경우 회계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등에게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자등의 정확·투명한 회계처리 지원을 위해 현재도 대면·비대면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중에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해당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회계 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회계 관리 관련 교육의 실시로 보조사업자등의 회계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및 보조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39조의3에 근거,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e나라도움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자별 보조금 관리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보조

사업자등에 대한 회계관리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여 동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현재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7조의4(회계 관리 교육)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계 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문의처

02)6788-5152

